#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비욘드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3. 10. 10.

3. 조치내용

| 제재대상 | 제재내용 |
|---|---|
| 기 관 | 경영유의사항 5건 |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 사전 심사 절차 강화

비욘드자산운용㈜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전 내부 점검 절차가 미흡하여 일부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에 오기 등 부적절한 표시가 있었으므로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운영 개선

비욘드자산운용㈜는 대체투자펀드인 「비욘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의 펀드 설정 이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회사채 원리금 미상환, 피투자회사 실적 악화 등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적시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3) 이해관계인 거래의 적정성 검토 절차 강화

비욘드자산운용㈜는 「비욘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 (4) 위험관리규정 개정 및 준수

비욘드자산운용㈜는 전체 펀드의 위험 요소·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 하여야 하나 이중 대체투자펀드의 위험 요소·현황만을 점검하고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내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펀드 종류에 따른 유동성 위험, 차입조건 및 구조화 자산 관련 위험 등 위험의 평가·관리를 위한 내규와 위험관리부서의 사전적, 독립적 펀드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한 위험 평가 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체 펀드의 위험 요소·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위험관리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주요 위험별 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5)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이해상충 방지·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비욘드자산운용㈜의 대표이사는 경영 전반 책임자로서 펀드 운용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도록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